

# 세계환경 변화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국제포럼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기업 또는 선진국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국가들이 개도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게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의 주도권에 희생되지 않고 국제포럼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윤 미 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서론

세계무역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1999년 전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관련법 수정 건수는 약 140건에 달하였는데 이중 131건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기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sup>1)</sup> 한편,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확산도 가속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OECD는 1998년 260억 달러에 머물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2005년에는 1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sup>

세계경제의 경쟁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는 국경간 인수합병(특히 수평 경쟁자간 초대형 인수합병)의 사상 유례없는 증가이다. UNCTAD는 1987년 천억 달러에 불과하던 세계의 국경간 인수합병 총액이 1999년에는 7천 200억 달러로 증가, 세계 국민총생산(GDP)의 약 2.4%를 구성하며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 추세에 따라 경제행위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정책과 관련된 이슈들도 국제적인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쟁정책 및 관련제도가 일원화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제도적인 차이에 의해 통상마찰이 유발되기 쉽다. 미국과 일

1) UNCTAD 2000. World Investment Report : 6

2) inews24. 2000년 8월 21일.

본의 코닥-후지 사건,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잉-맥더글라스 합병 사건 등이 이의 좋은 예이다. 따라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은 WTO 뉴라운드의 중요한 신통상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글에서는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 동향을 주로 WTO에서의 논의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경쟁정책 국제포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II. WTO에서의 논의<sup>3)</sup>

WTO에서는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싱가폴)에서 무역과 경쟁작업반 (Working Group on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이하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년 동안 관련분야를 향후 다자협정 체결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작업반의 활동은 경쟁정책 다자협상의 사전준비에 준하는 것으로 뉴라운드에서 경쟁정책이 신의제로 채택되어야 할 것인가를 일반 이사회에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작업반은 1997년 7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7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뉴라운드 신의제 채택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작업반은 이에 대한 권고 대신 1999년 9월 일반이사회에 작업반의 회의결과를 보고하면서 작업반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1999년 3차례의 공식회의를 더 개최하였지만 별다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신의제 채택 여부는 1999년 12월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가 무산되어 경쟁정책의 신의제 채택에 대한 결정은 아직도 묘연한 상태로 남게 되었고, 최근의 논의에서도 이렇다할 진전은 없어 보인다.<sup>4)</sup> 시애틀 각료회의 이전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개도국들의 반대로 경쟁정책의 신의제 채택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으나 EU,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적극적으로 다자간 협정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경쟁정책을 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무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무역과 관련된 경쟁이슈들에 대하여 WTO에서 협의된 규범을 제정하자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무역과 경쟁정책의 접점(interface)이 어느 정도 인지, 국제경쟁규범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으며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접근에 국한시켜 보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무역정책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대표적인 예로 반덤핑)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제카르텔, 국경간 합병에 대한 규범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반덤핑 이슈 논의 포함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는 특히 국제규범화 논의 진전에 걸림돌이 되었었다.

현재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로 EU 제안이 대두되고 있다. EU는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며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다자간 규범안을 제시하

3) 자세한 내용은 윤미경 2000. '무역과 경쟁정책,' 윤창인 외 2000.『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경제사회연구회 소판기관 WTO 협동연구시리즈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47-209쪽을 참조.

4) 금년들어 뉴라운드협상 준비 논의가 다시 재개되고 있으며 농업과 서비스 분야는 이미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고 있다. EU안은 다자간 규범을 두 단계에 걸쳐서 협상하되 이번 뉴라운드에서는 첫 단계로 경성카르텔 이외에는 실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은 핵심 원칙에 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에 합의하고 차기 라운드에서 실체적 내용에 대한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이다. 핵심 원칙의 주요 내용은 회원국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경쟁당국을 설치하되 그 내용과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집행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은 포함하되 경쟁법 집행방법 또는 특정 반경쟁행위에 대한 불집행 (pattern of non enforcement)은 분쟁해결기구 회부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킨다. EU안은 또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반덤핑 이슈를 제외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고려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제규범에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sup>5)</sup> 반덤핑 이슈를 경쟁정책 이슈와 연계하여 논의하는데 관심을 보여 왔던 일본도 미국의 완강한 반대를 의식하여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실체적 내용으로 포함할 것을 고집하지는 않고 있다.

개도국들은 경쟁정책에 대한 구속적 국제규범의 제정에는 소극적이다. 경쟁정책 국제규범이 다국적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국의 산업정책 운영과 상치될 수 있다는 점, 선진국에 의한 경쟁정책 집행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유

예기간 및 예외인정의 정도, 그리고 타 부분에서 얻어낼 수 있는 보상 등에 따라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자협정보다는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협정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하여 경쟁정책관련 국제문제를 규율하는 것을 선호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도 이제는 양자협정만으로는 날로 국제화되어 가는 경쟁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체제전환국들과 개도국들이 경쟁법을 도입하면서 다국적기업들이 합병할 경우, 사전통보 및 사전심사 등의 절차를 여러번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증가하고 기타 국제문제에 대한 판결에서도 80여개국의 경쟁당국과 일관성 있는 조율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자적인 국제협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WTO는 경쟁관련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며 WTO에서의 경쟁정책 국제규범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반덤핑 이슈가 논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WTO에서의 논의 대신 경쟁정책의 국제협력 제고를 위하여 아주 느슨한 형태의 새로운 국제포럼이 형성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I. ‘경쟁정책 국제포럼’에 대한 논의

‘경쟁정책 국제포럼’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의 구체적 형태는 미국 경쟁당국의 국제경쟁자

5) “A Multilateral Agreement on Competition Policy,” Communications from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2000년 9월. <WT/WGTCP/W/152 : 13>. 최근 EU는 경쟁정책 분야에서 복수간 협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대하여 OECD 무역위원회 회의(2001. 2. 13.)에서 일본,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이 명시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월 경쟁정책 Friends 국가 비공식 회의 때에는 개별국의 지지가 없었다. 또한, 경쟁작업반 공식 회의에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외교통상부 2001. 2. 19. ‘제18차 WTO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회 회의자료’ 및 ‘WTO 뉴라운드협상 논의동향(2001-4)’).

문위원회(International Competition Advisory Committee : ICPAC)가 처음 제시하였다. 미국 경쟁당국은 1997년 국제경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카르텔, 국경간 인수합병, 전자상거래 그리고 경쟁관련 국제협력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는 2년간에 걸쳐 완성된 연구결과 보고서(2000년 2월 발간)에서 WTO는 무역관련 문제와 정부조치에 국한되어 있으며 구속적인 규범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반적인 경쟁관련 이슈들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하였다. 요컨대, WTO가 설사 분쟁해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경직된 WTO의 조항을 통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분석을 요하는 경쟁관련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체제전환국과 개도국 등에서 경쟁법을 도입하고 경쟁당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분석 능력 및 집행절차가 미숙하여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국의 이익을 떠나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각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미국 및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경쟁정책을 도구로 하여 다국적 기업 등 선진국 기업의 국제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어떤 구속적인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에 경쟁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가능한한 미국식의 이론적 틀 및 분석 기법과 법적 체계에 가까운 제도들이 자발적으

로 도입되어 각국의 경쟁정책이 서서히 수렴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이를 위하여 동 위원회는 G7과 같이 관료화되지 않은 아주 느슨한 형태의 국제포럼(Global Competition Initiative : GCI)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물론 참여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이 관심 있는 국가들을 비롯하여 현재 경쟁 이슈들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WTO, OECD, UNCTAD, 및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동참하여 일종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나아가서 국제포럼은 구속적인 규범을 만들기보다는 APEC에서와 같이 상호심의(peer pressure)를 통하여 작동하는 포럼이며,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창설한 ‘글로벌 지배구조 포럼(Global Corporate Governance Forum)’과 흡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포럼을 통하여 미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미국식 분석기법을 확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 기능을 포함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현실 가능한 분쟁중재의 형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동 위원회는 미국이 동시에 주요 무역국과의 양자협정 및 상호법적지원협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심화해야 하며 경쟁정책의 논의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WTO에서 논의가 지속되거나 규범화가 가능한 분야에 한해 경쟁규범이 마련되는 것도 굳이 배

6) 미국 국제경쟁자문위원회 보고서 2000 : 281-302. 최근 미국 반독점 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 : AAI)가 제의한 국제 경쟁정책 아카데미(International Academy of Competition Policy)의 설립은 이러한 미국의 기본 철학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8년 설립된 AAI는 국영기관은 아니지만 다수의 연구위원들과 이사회 임원들이 경쟁정책과 관련된 전·현직 관료들로서 미국의 정책조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카데미는 개도국 관료들을 경쟁정책 분야에 특화하여 교육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AAI는 이의 설립을 위한 기금마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AAI의 제안은 4월 12일 세계은행 주최의 한 세미나('What's in a Global Competition Initiative in Developing Countries?')에서 논의될 예정이다(AAI 보도자료 2001. 3. 19.).

제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미법무부 독점국의 전임 차관보였던 클라인(Joel Klein)과 전임 차관보대리였던 멜라메드(Douglas Melamed)의 최근 연설문을 보면 적어도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 경쟁당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상당부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sup>

EU는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양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경쟁위원인 몬티(Mario Monti)의 최근 연설문을 보면 이는 첫째, 양자협력 일변도의 미국정책이 다자협력 쪽으로 회선 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협력 방식이 EU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몬티는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는 사실 EU가 이미 1996년부터 제창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EU의 경쟁 위원이었던 미어트(Karel Van Miert)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WTO의 무역과 경쟁작업반이 설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8)</sup>

민간부문에서도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를 느끼고 관련 전문가간의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기관은 국제법률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이다. 협회는 1991년 내부에 경제학자, 변호사, 정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경쟁과 무

역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Competition and Trade Policy)'이라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EU와 APEC 등과 같은 지역기구 및 OECD, 세계은행, UNCTAD, WTO,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관들과 공동으로 관련 주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이렇게 EC, 미국 경쟁당국, 그리고 국제법률협회 등 3개 기관을 주축으로 추진되어 오던 논의간의 상호관계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금년 2월 국제법률협회 주최로 영국에서 열린 회의를 통하여 이런 논의들이 통합되고 경쟁정책 국제포럼 창설이 가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9)</sup> 경쟁정책 국제포럼 창설을 위한 준비모임의 성격을 가지는 동 회의에는 EC와 미국 경쟁당국의 유력 인사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참가하였으며 20여 개국의 경쟁정책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sup>10)</sup> 참가자들은 국제포럼의 공식적인 출범을 올해 가을로 잠정합의하고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

첫째, 개도국 참여의 문제 : 국제포럼은 관심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된 포괄적인 모임이어야 하며 특히 개도국과 경쟁당국을 신설한 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

7) Joel Klein 2000. "Time for a Global Competition Initiative?" EC Merger Control 10th Anniversary Conference. Douglas Melamed 2000. "Promoting Sound Antitrust Enforcement in the Global Economy." Fordham Corporate Law Institute. 27th Annu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Antitrust Law and Policy.

8) EU 보도자료 2000. 10. 27. "EU Competition Commissioner outlines ideas for an international forum to discuss competition policy issues." <<http://www.europa.eu>>

9) 한편, 이러한 논의는 OECD가 현재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포럼(경쟁정책 분야에서는 2001년 10월 처음 개최될 예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OECD의 글로벌 포럼은 그러나 그 내용과 취지에 있어서는 새로 제기되고 있는 경쟁정책 국제포럼과 상당부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중에서는 이스라엘, 헝가리, 브라질, 멕시코, 터키, 남아공, 폴란드 등이 참가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동 회의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신정부의 경쟁정책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국에서는 법무부 독점국의 차관보 대행이 참석하였음으로 차후에 미국정부의 지원이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회의 일정이 정해진데 대하여 이미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사소하지만, 분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New York Times 2001. 1. 28.).

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의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포럼은 개도국에 대해 금전적 지원보다는 지적 지원 측면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들은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만이라도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둘째, 합병규제에 대한 논의 : 국제포럼은 그 어떤 특정 주제도 제외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유일한 실체규정 분야는 합병규제이다. 참가자들은 합병의 사전통보가 필요한 국가는 60여개국에 이르며 이러한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이 자연되고 합병규제에 대한 국가간의 불일치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적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제포럼은 실질적으로 법적 일원화에 기여하지는 못하겠지만 합병규제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연구하고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하여 분석과 법적 판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참가자들은 미국이나 EU와 같이 성숙한 경제의 경쟁법 및 분석기법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하였다.

셋째, 국제포럼의 구조 : 국제포럼의 목적은 경쟁정책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판료적인 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다자간 논의를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포럼은 독립적이며 상설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최소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두기로 하고 임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하

기 위한 작은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에 필요한 지원은 국제법률협회가 제공하기로 하였다.

#### IV. 결론

한국은 WTO차원에서 경쟁규범의 다자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반덤핑법의 폐해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부각되고 미국 등에 의한 경쟁법의 일방적 역외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기대하여 경쟁정책을 뉴라운드 신의제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하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국제포럼의 창설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왔는데 뉴라운드가 다시 재개될 현 시점에서 급속히 가시화 되고 있는 국제포럼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국제포럼이 WTO를 대체하는 공식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쟁정책의 신의제 채택 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뉴라운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TO의 무역과 경쟁작업반의 활동기간은 뉴라운드 협상이 무산되었으므로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뉴라운드가 성공리에 개최되지 않거나 경쟁정책이 신의제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또한, 최근 EU가 경쟁정책을 복수간 협정으로 하자는 제의도 국제포럼의 태동과 연결시켜 보면 WTO에서는 경제환경이 비슷한 국가간에 높은 수준의 경쟁규범을 설정하되 국제포럼과 같은 비공식 대화창구를 통하여 선진국 '사고방식'을 국제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WTO 하에서의 경쟁정책 국제규범화가 과연 한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포럼은 기존의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논의

에 비해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이 WTO, UNCTAD,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대체로 정부관료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국제포럼은 의식적으로 이러한 관료주의에서 탈피하려고 하고 있으며 민간(특히 국제법률협회)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기존의 논의에서 국제카르텔 또는 무역과의 관계가 주로 논의된 것에 비해 국제포럼의 최초 준비모임에서 논의된 주제가 합병규제라는 점만 해도 민간기업(특히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제포럼의 참여자들은 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포럼의 논의는 각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협상의 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제포럼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다국적기업 또는 선진국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국가들이 개도국의 정책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게는 어떻게 하면 선진국의 주도권에 희생되지 않고 국제포럼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이러한 논의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데, 국제포럼은 향후 국제협력의 형태와 WTO 뉴라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보다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포럼과 기존의 다른 논의와의 관계 설정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국제포럼의 주도자들은 기존의 주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으나 어떻게 각 기관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국제포럼이 관련 전문가들간에 합의를 이루어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국익이 걸린 경쟁정책 관련 국제분쟁에 있어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점에서 국제포럼은 기존 논의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